

2015년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및 휴직자 선발 공고

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및 휴직자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인사혁신처장

1 개요

가. 목적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공직 내·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조직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무원의 변화대응력과 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도입
- (공직)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 및 정책품질 제고
 - 민간기업의 혁신사례 및 경쟁력을 공직내 이식·확산하여 정책 전문성 제고
- (민간) 법률·정책, 해외진출 등에 특화된 경영활동 지원
 -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입안으로 현장 적합도 제고
 - 공적 영역에서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사업추진 현장에 적용·반영

나. 민간기업 등의 범위

- 휴직이 허용된 기업범위
 - 상법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서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등기한 외국회사
 -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단체·협회 등

- **휴직 제외기업** (공무원임용령 제5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70조 제2항)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반기별로 지정 고시(분야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동법 제4조제1항제2호)
 -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유한)(동법 제58조의2), 법무조합(동법 제58조의18), 법률사무소(동법 제89조의6제3항)
 -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 세무법인(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
 -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등에서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민간기업 등

다. 휴직공무원의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국가공무원
- 연령의 경우, 2015.12.31. 기준으로, 3급·4급은 53세 이하('62.1.1.이후 출생자), 5급~8급은 48세 이하('67.1.1.이후 출생자)인 공무원
 - ※ 상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제외대상
 - 추천일 前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가 해당 민간기업 등과 인·허가, 직접적인 감독 등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무원
 - ※ '밀접한 관련성' 여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준용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민간근무 휴직을 하였던 공무원

라. 공무원 채용 희망기업의 신청기일 및 접수처

- 신청기일 : 2015.10.19(월)~10.30(금)
- 접수처 : e-mail : jaemin777@korea.kr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1608호) 유재민<02> 2100-6762>

2 세부 시행계획

가. 기본 방침

- (대상기업 확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휴직대상기업에 포함
* 금융지주회사,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제한
- (기업 선정) 개인이 아니라 부처에서 기업과 직위협약·발굴
- (휴직자 선발) 내부 공모 절차를 걸쳐 우수인재(성과평가 + 내부경쟁 구도) 선발
- (성과평가 관리 강화) 업무추진 실적(기업에 공헌한 내용, 기업으로부터의 시사점), 근무실적 및 복무실태 평가
- (민관유착 근절) 휴직 중 민관유착 의혹 시 감사 실시, 휴직 후 복귀 시 2년간 휴직기업 등 관련부서 배치 금지
- (조기퇴직 방지) 휴직 복귀 후 의무복무기간(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설정

나. 운영 방안

□ 휴직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하되, 근무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휴직공무원 보수

- 휴직직전 보수의 1.3배(성과급 포함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휴직공무원이 휴직대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함

□ 민간기업 선정시 주요 기준

- 민간기업 등의 범위 충족여부
- 보수수준·근로조건·채용직위·기타 처우상의 적정성
- 민관유착 가능성, 채용 공무원에게 부여할 업무의 적정성(인·허가 업무 배제 등) 여부
- 납세문제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지 등 휴직 대상기업으로서의 적정성

□ 휴직대상 공무원 심의 기준

- 휴직공무원의 자격요건 · 발전가능성 · 복귀 후 기여도
- 휴직예정일 前 5년 동안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 대상여부 등(인·허가, 직접적인 감독, 재정보조 제공 등)
- 민간근무 시 담당할 직위 · 업무의 적정성
- 휴직 대상기업과의 이해관계 여부(친족관계, 사적 이해관계 등) 등

□ 운영실태 점검

-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를 연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
- 업무내용 및 실적(기업에 공헌한 내용 등), 근무실적 및 복무실태(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평가
- 소속장관은 민관유착 방지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요구 또는 소속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
- 필요시, 근무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후 휴직 기간연장 등에 반영

다. 운영 절차

□ 채용 신청(민간기업 등 → 인사혁신처, 2015.10.30.限)

- 공무원 채용희망 민간기업·단체·협회 등은 채용계획서, 기업소개서, 기업의 복무규정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인사혁신처에 신청·접수
※ 민간기업(기업 자체) → 인사혁신처, 각 부처(발굴 기업) → 인사혁신처

□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심의

- 공무원 채용희망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에서 대상기업 및 직위의 적정성 등을 심사

□ 적합한 기업의 신청 수요 통보(인사혁신처 → 각 부처, 기업)

- 채용희망 민간기업 등의 현황과 채용요건, 보수 등 채용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 **휴직대상공무원 추천**(휴직희망공무원 → 소속부처 → 인사혁신처)

- 민간근무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처에 휴직 신청
- 내부 공모절차를 걸쳐 우수인재 선발
 -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부처 내 핵심인재 양성차원에서 접근
- 소속장관은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해당기업·직위별로 적합한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에 추천(복수 원칙)
 - 휴직공무원 추천서, 요건심사서, 민간근무 수행계획서 등 제출
 - *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준용 :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3~9명 이내로 구성

□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심의·선발**

- 부처별로 제출된 민간근무휴직 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휴직대상공무원의 자격요건, 보수기준 등 심의·선발
- 최종 선발결과를 부처 및 해당기업에 통보

□ **채용계약 체결 및 결과 통보**(해당부처 → 인사혁신처)

- 최종 선발된 휴직대상공무원은 해당기업과 보수 및 근로조건에 관한 채용계약 체결 및 1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2015.12.31.까지 실시하고, 채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휴직에 있어 부처 및 기업체 사정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2016.1.31.까지 발령 완료
 - 휴직공무원은 휴직 전 사이버 청렴교육(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acti.coti.go.kr>)을 사전 이수*하고 '공직자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장관에게 제출 * 신청기한 : '15.11.25

《 **선발절차** 》



라. 준수사항

휴직공무원	민간기업	소속 부처
① 공직자윤리서약서 작성 → 소속 장관에게 제출	① 적정한 보수 지급 및 근로조건 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제공 등 성실히 이행	① 민간기업 등에서의 근무실태 점검(연2회),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 관리
② 법령상 의무 및 민간기업 복무규율 등 성실히 준수	② 보수·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 금지	② 복직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승진 등의 인사운영에서 불리한 처우 금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복무 관리
③ 지위를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 품위 손상 행위 금지	③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 금지	③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 등과 밀접한 부서 배치 금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준용
④ 법령 위반, 지위 또는 권한 남용 등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금지		④ 민간기업 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⑤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 금지,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특별한 혜택 금지		

3 향후 일정

□ '15. 10월 : 공무원 채용 희망기업 신청·접수(~10.30.限)

※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별첨1]

□ '15. 11월 : 휴직대상기업 선정 / 기업 수요 부처통보 / 휴직공무원 추천(각 부처→인사혁신처)

□ '15. 11월 : 휴직공무원 심의·선발 / 선발결과 부처·해당기업 통보

□ '15. 12월 : 채용계약 체결 및 휴직 실시(12.31까지)

[별첨 1]

민간근무휴직 관련 구비서류 안내

□ 채용신청 (민간기업 등 → 인사혁신처장)

-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각 부처 발굴 기업 포함) 등의 장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기한 내 신청

※ 각 부처에서 발굴한 기업은 부처에서 일괄 신청 가능

① 공무원채용계획서(붙임 1) 1부

* 채용계획서중 다음사항은 별지로 구체적 작성(서식 없음)

(채용이유, 직무난이도·직급 등이 유사한 타직원과의 보수수준 비교, 담당직위 및 업무사항, 복리후생 제공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

② 기업소개서(자산·연간매출액, 임직원·조직도 등) 1부(서식 없음)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④ 기업의 복무규정 1부

⑤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⑥ 공무원채용계획 제출시 확인사항 1부

※ 인사혁신처에 e-mail 및 직접·우편(등기)으로 신청

- e-mail : jaemini777@korea.kr (☎ 2100-676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유재민(1608호)

□ **민간근무 휴직대상자 추천** (소속장관 → 인사혁신처장)

- 민간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는 부처의 소속 장관은 적정 대상자를 선정,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기한 내 추천

① 추천서식

기 관 명

인사담당관 확인 (인)

휴직대상기업		소 속 (실·과)	직 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실근무 경 력	비 고
기업명	부서						

- ② 휴직대상공무원 추천서 1부(붙임2)
- ③ 휴직대상공무원 요건심사서 1부(붙임2)
- ④ 민간근무휴직 신청서 1부(붙임2)
- ⑤ 휴직대상공무원의 자기소개서 및 민간근무 수행계획서 각 1부(서식없음)
 - * 자기소개서(주요 경력,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 * 민간근무수행계획서(민간근무 필요성, 휴직 복귀 후 활용계획 등)
- ⑥ 최근 3년간('12~'14년)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1부
 -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료
- ⑦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14.11~'15.10.) 1부
 - * 부처 보수 담당부서에서 발급
- ⑧ 휴직대상공무원이 취득한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⑨ 자체추천위원회 의결서 1부

⑩ 휴직 前 5년간 소속부서(과) 주요 업무

소속부서(과)	근무기간	소속부서 주요업무
(작성 예시) 인사정책과	'10.10.1~'14.5.31 (3년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 운영 및 제·개정 검토 ▶ 명예퇴직제도 운영(본인) ▶ 전문직위제도 운영 및 조사 연구 ▶ 인사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본인)
개방교류과	'14.6.1~현재 (1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고용휴직 제도 및 운영(본인) ▶ 민간근무휴직 제도 및 운영 ▶ 인사교류제도 수립 및 시행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 개방형·공모 직위 제도 및 운영

☞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본인 담당업무는 “(본인)”이라고 표시

※ 첨부서류

1. 기업소개서

- 사훈 및 경영이념, 사업내용, 기업연혁, 자산·연간매출액, 임직원 수, 조직도 등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기업의 복무규정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5. 채용계획 제출시 확인사항 관련 자료

※ 작성요령

1. 채용이유란에는 공무원의 임시채용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예시) 미주지역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지식 및 정책경험 활용 등

2. 채용기간 : 공무원을 채용할 기간을 연 또는 월 단위로 기재

3. 공무원자격란에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위(보직)에 따른 공무원의 계급과 연령, 경력 요건 등을 기재한다.

- 예시)

계급 : 5급(행정)	연령 : 40세미만	재직기간 : 5년 이상
경력요건 : 2년 이상 국제협력업무 수행자		
기 타 : 기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 지정		

4. 근무조건란에는 채용직위의 부서명, 직위(보직)명, 수당을 포함한 연간 보수총액 (또는 월평균 보수액), 근무지역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계선조직상의 부서·직위 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자문·보좌역할 부여는 제한됨

- 예시)

부서 : 국제협력실	직위(보직) : 무역팀장
보수 : 연봉 5,000만원	근무지역 : 서울(00동)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복리후생 :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기타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실시 등	

5. 담당업무란에는 채용직위(보직)의 수행업무를 비중순으로 기재한다.

- 예시)

○ 무역 대상국 선정 및 발굴 업무(50%)
○ 통상 교섭, 마케팅, 투자 유치 등 (30%)
○ 부서 업무 총괄 (20%)

6. 채용계획 확인사항 란에는 각각의 항목들을 확인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를 기재한다

[붙임 2] 휴직희망 추천자용

휴직대상공무원 추천서

공무원 인적사항	기관명		소속부서		사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자격증		이메일			
	재직기간		관련경력기간	총 00년	담당업무	
	관련 경력	기간	직급(직위)	부서		
신청기업	기업명					
	직위(보직)					
근무조건	공무원 희망			기업등 채용계획		
	보수	년	원	보수	년	
	기간			기간		
확인사항					확인결과	
추천공무원 적정성 검토	○ 승진임용 제한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은 아닙니까?				예	아니오
	○ 해당 민간기업등과 특수 이해관계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	아니오
	○ '휴직전 5년동안 소속부서' 업무와 휴직대상 기업과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으로 공무원임용령 제53조제1항의 휴직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
	○ 민간근무휴직 후 복직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지는 않습니까?				예	아니오
	○ 복직 후 민간근무 경험에 의해 업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되는 우수한 공무원입니까?				예	아니오
	○ 기타 휴직대상자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까?				예	아니오
<p>상기 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4항에 의거하여 민간근무휴직대상공무원으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자(인사담당관) 성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추천기관명 : 직인</p>						

※ 첨부서류

1. 민간근무휴직신청서 사본
2. 자기소개서 및 민간근무 수행계획서 사본
3. 최근 3년간('12~'14년)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사본
4.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14.11~'15.10.)
5. 자격증 사본(해당자)
6. 자체추천위원회 의결서 사본

※ 작성요령

1. 관련경력기간란에는 기업에서 제시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총 근무경력기간을 기재한다.
2. 관련경력란에는 기업에서 제시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총 근무경력기간에 해당하는 주요 근무경력을 기재하고, 담당 업무란에는 수행한 주요 업무 내용을 기재한다.
3. 신청기업 및 근무조건란(기업등 채용계획)은 인사혁신처장이 통보한 “민간기업등의 공무원채용계획서”를 기초하여 기재한다.
4. 추천공무원의 적정성 검토란에는 각각의 항목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다.

휴직대상공무원 요건심사서

인적사항	소속 : _____		직위 : _____	
	직급 : _____			
	성명 : _____			해당유무/ 적격여부
민간근무 공무원의 적격성	자격요건	직급, 연령, 근무경력		
		‘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 업무와 휴직대상 기업과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 유무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정보 제공 여부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⑤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한 바가 있는지 여부		
		⑦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과 관계되는지 여부		
	⑧ 그 밖에 업무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승진임용제한기간 여부 / 과거 민간근무휴직 여부			
	발전 가능성	민간의 경영기법 및 업무수행방법의 습득		
		민간기업에 대한 이해 및 정책협조 강화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험의 확대				
민간기업 과의 이해관계	임원 등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자와의 친족관계 여부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 가능 여부 등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이행 가능성				
작성 및 확인자		_____	_____	_____
○ ○ 부 직위		_____	_____	(인)

공직자 윤리 서약서

(제74조제3항 및 제84조제4항 관련)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근무(고용)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민간기업(고용기관) 등에 근무함에 있어 공직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함과 아울러 민간기업(고용기관)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 및 민간기업(고용기관)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 기타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채용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3. 민간기업(고용기관) 등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 또는 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민간근무(고용)휴직 중 또는 복귀 후에 당해 민간기업(고용기관) 등에 대하여 편중된 업무처리, 직권남용, 이권개입 등을 하거나 이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5. 복직 후에는 민간기업(고용기관)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재직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타 민간근무(고용)휴직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제 규정 위반 시에는 조기복귀 등 상응하는 처분에 대하여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기관장) 귀하